의 안 번 호

1438

## [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]

# 검 토 보 고 서

### 1. 검토경과

가. 제 출 일 자 : 2018. 4. 4.(수)

나. 제 출 자 :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
다. 위원회 회부일자 : 2018. 4. 4.(수)

라. 위원회 심사일자 : 2018. 4. 13.(금)

### 2. 제안이유

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중요 재산의 취득을 결정하기 전에 "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"을 수립하여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임

### 3. 주요내용

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총 4건(취득)으로 13,000백만원임

#### 1) 중구문화원 건립

O 건물신축 연면적 1,000㎡(지상 4층) / 2,600백만원

#### 2) 중구야구장 조성

○ 토지매입 9,922㎡, 성인야구장, 주차장 등 / 5,000백만원

### 3) 중구보훈복지회관 건립

O 건물신축 연면적 1,647㎡(지하 1층, 지상 4층) / 3,900백만원

### 4) 함월 도담숲 조성

○ 토지매입 6,427㎡, 무장애 데크로, 데크광장 등 / 1,500백만원

### 4. 취득계획 세부내역

# ① 중구문화원 건립

가. 주관부서 : 문화관광실

나. 취득 재산현황

O 위 치: 울산광역시 중구 옥교동 239-1번지

O 취득재산 : 건물신축 연면적 1,000㎡(지상 4층)

O 용도지역: 도시지역, 일반상업지역

O 기준가격 : 2,600백만원(건축비)

#### 다. 취득사유

O 임시 이전하여 운영 중인 중구문화원의 건립으로 지역 전통 문화 계승과 문화진흥 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,

○ 문화원 건립으로 체계적인 문화사업 공간 확보로 지역주민 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높이고, 문화프로그램 강좌뿐만 아니라 문화전문가 양성 등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다양한 문화사업 추진에 기여하고자 함

라. 주요시설: 전시관, 대강당, 강의실, 회의실, 도서실 등

마. 사업기간 : 2018. 4월 ~ 2019. 12월

# ② 중구야구장 조성

가. 주관부서 : 평생교육과

나. 취득 재산현황

O 위 치 : 울산광역시 중구 약사동 산 34-1번지 등 7필지

○ 취득재산 : 토지매입 9,922㎡ 및 성인야구장 등 조성

O 용도지역: 도시지역, 자연녹지지역

○ 기준가격 : 3,826,112천원(토지매입 326,112 , 시설비 3,500,000)

※ 총사업비 : 5,000백만원

#### 다. 취득사유

- 중구 사회인 야구동호회 클럽(43개)과 1,500여명의 동호인들이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으나, 우리 구에 야구장 부재로 동호인들의 사기 저하 및 야구장 건립 요청 민원 등 야구 동호인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며,
- 혁신도시 내 야구장을 조성함으로써 향후 실내체육관 건립에 따른 복합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으로 야구동호인의 생활 스포츠 활성화 및 주민들의 체육활동 공간 확보로 중구민 들의 건강증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

라. 주요시설: 성인야구장, 안전펜스, 덕아웃 벤치, 주차장 등

마. 사업기간 : 2018. 4월 ~ 2019. 12월

# ③ 중구보훈복지회관 건립

가. 주관부서 : 주민생활지원과

#### 나. 취득 재산현황

O 위 치: 울산광역시 중구 유곡동 266-6번지

○ 취득재산 : 건물신축 연면적 1,647㎡(지하 1층, 지상 4층)

O 용도지역: 일반주거지역

○ 기준가격 : 3,900백만원(건축비)

### 다. 취득사유

○ 보훈안보단체(보훈8, 안보1) 사무실을 중구종합사회복지관내 (3층)에 설치·사용함으로 회원 상호간 결집력 결여 및 회원 들의 의욕이 상실되고 있음.

(울산광역시 구・군 중 중구만 보훈회관이 없음)

- O 특히, 종합사회복지관의 자체사업 추진을 위한 공간부족으로 보훈안보단체 사무실을 별도 확보 이전을 요구하고 있음.
- 보훈안보단체들의 안정적인 예우 지원 및 보훈가족들의 자긍심과 사기 진작을 위해 숙원사업인 보훈복지회관 건립이 시급한 실정임.

라. 주요시설 : 보훈안보단체 사무실(9개), 회의실, 체력단련실,

대강당, 프로그램실, 주차장 등

마. 사업기간 : 2018. 4월 ~ 2019. 6월

# ④ 함월 도담숲 조성

가. 주관부서 : 공원녹지과

#### 나. 취득 재산현황

O 위 치 :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산 198-4번지

○ 취득재산 : 토지매입 6,427㎡ 및 무장애 데크로 등 조성

O 용도지역: 자연녹지지역, 체육시설

○ 기준가격 : 656,176천원(토지매입 156,176 , 시설비 500,000)

※ 총사업비 : 1,500백만원

#### 다. 취득사유

- 성안동 함월구민운동장 인근에 2017년 12월 함월놀이숲이 조성되면서 가족단위의 이용객이 증가하였으나 이를 수용할 시설 및 공간이 부족한 실정임
- 인근 사유 토지를 매입하여 함월 도담숲 조성으로 구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성안물놀이장, 함월놀이숲, 운동시설과 연계한 함께하는 가족 여가공간으로 자리매김하여구민들의 행복지수를 증대하고자 함

라. 주요시설 : 무장애 데크로, 데크광장, 피크닉 테이블 등

마. 사업기간 : 2018. 4월 ~ 2019. 12월

### 5. 근거법규

가.「지방자치법」제39조

나.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1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7조

다. 「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제11조

### 6. 검토의견

- 본 계획안은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 따라 중요 재산의 취득 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,
- 본 계획에 의하면 중구 문화원 건립 26억원, 중구 야구장 조성 50억원, 중구 보훈복지회관 건립 39억원, 함월 도담숲 조성 15억원으로 총 13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며, 그 중 시비 73억원으로 56.2%, 구비 57억원으로 43.8%를 차지하고 있음.
- O 취득재산(안)의 내용을 살펴보면
  - 지역 전통문화 계승 및 다양한 문화사업 공간 확보로 구민 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"중구 문화원"을 건립하고,
  - "중구 야구장" 조성으로 야구 동호인들의 사기저하 해소 및 야구장 건립 요구에 부응하고 체육 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생활스포츠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,
  - 보훈 안보단체 회원들의 자긍심 고취 및 국가 보훈대상자 예우로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해 "중구 보훈복지회관 건립"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.
  - 또한, 함월구민운동장 등과 연계하여 가족 여가활동 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해 "함월 도담숲"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취득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음.

# 근 거 법 규

## 지방자치법

제39조(지방의회의 의결사항)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
- 1. ~ 5. (생략)
- 6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·처분
- 7. ~ 11. (생략)
- ② (생략)

#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(약칭: 공유재산법)

- 제10조(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·변경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(이하 "관리계획"이라 한다)을 세워 그 지방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 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.
  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, 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)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  -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·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출 절차는 「지방자치법」제46조에 따른다.
  - ④~⑤(생략)

#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(약칭: 공유재산법 시행령)

- 제7조(공유재산의 관리계획)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(이하 "관리계획"이라 한다)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[매입, 기부채납, 무상 양수, 환지(換地), 무상 귀속, 교환, 건물의 신축· 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,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. 이하이 조에서 같다] 및 처분(매각, 양여, 교환, 무상 귀속, 건물의 멸실,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. 이하이 조에서 같다)으로 한다.
  - 1.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가. 취득의 경우: 20억원(시·군·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) 나. 처분의 경우: 10억원(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)
  - 2. **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**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
    - 가. <mark>취득의 경우: 1건당 6천제곱미터(시·군·<mark>자치구의 경우에는</mark> 1천제곱미터)</mark>
    - 나. 처분의 경우: 1건당 5천제곱미터(시·군·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)
  - ②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.
  - 1. 사업목적 및 용도
  - 2. 사업기간
  - 3. 소요예산
  - 4. 사업규모
  - 5. 기준가격 명세
  - 6. 계약방법
  - ③ ~ ⑤ (생 략)

- ⑥ 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"1건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- 1. 같은 취득·처분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하는 경우
- 2. 토지와 건물 및 그 부대시설을 하나의 사업계획에 따라 다년도에 걸쳐 취득·처분하는 경우
- 3. 매수 상대방이나 매각 상대방이 같은 사람인 경우
- 4.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를 함께 취득·처분하는 경우
- 5. 해당 재산에 인접(隣接)하거나 부대시설로 되어 있어 해당 재산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·처분하는 경우
- 6. 분필(分筆)되어 있거나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같은 목적으로 관리·운영되고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·처분하는 경우
- 7. 그 밖에 사회통념상 또는 해당 재산의 구체적 여건에 따라 1건으로 하여 취득 또는 처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- ⑦ (생략)

#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

- 제11조(공유재산 관리계획)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라 예산을 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.
  - ② 구청장은 관리계획을 다음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 단,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·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.
  - ③ (생략)